



대법원장 1차 부의 안건 상정 및 활동기간 지정

2024. 6.

사법정책자문위원회

1.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경과

▣ 새로운 대법원장 자문기구 구성의 필요성 대두

- 대법원장 자문기구로서 지난 4년여 간 운영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사법부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, 그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적 뒷받침이 무산되어 계속 운영이 어려움
- 재판지연 심화,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신뢰지수 하락, 사법부 예산 비중의 급격한 감소 등 대내외적 상황 악화로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그를 위한 자문기구 운영의 필요성이 높아짐

▣ 법과 원칙에 따른 자문방안으로서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구성

- 법원조직법의 취지,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, 성과 등에 관한 검토 끝에,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제1기(2009년~2010년), 제2기(2013년~2014년)에 이은 “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” 운영을 결정함
-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, 기존 자문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부 제도 개선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함



2. 대법원장 1차 부의 안건

가. 재판절차

- 감정제도 개선
- 복잡사건에 대한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
- 판결서 적정화
- 민사 항소심 심리모델 개선

나. 법관인사제도

- 법관임용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검토
-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
-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법판사 제도 개선방안
- 사무분담 장기화에 따른 법관 전보인사 주기의 재편 및 유연화 방안

다. 법원공무원 관련 제도

- 사법보좌관제도 개선
- 법원일반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

라. 사법정보화

-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그 법적·윤리적 기준
- 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

※ 안건별 세부쟁점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 연구반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

3. 위원회 활동기간 지정

▣ 활동기간: 2024. 6. 12.~2025. 6. 11.(1년)

-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⇨ 회의 진행 경과를 살펴 추후 논의 예정